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8. 10. .
발 의 자	강승수의원 외 6명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강승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강승수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김택호 · 장미경 · 홍난이 의원(7인)

1. 제안이유

상위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세부 규정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정책실명제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바. 사업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의 교육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축사업
3.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구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구미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이력의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공무원 및 사업부서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 「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정책사업명			
②추진배경			
③사업개요			
④사업부서		⑤담 당 자	
⑥선정기준		⑦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00.00.00	○○○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명 그대로 기재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 당 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시정현안 / 대규모사업 / 복지시책 / 연구용역 / 자치법규 개폐 / 기타 中 택1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자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사업부서	④담당자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8-1, 2018-2)
-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illegible]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